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0일, 한병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1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4.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사회간접 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서 규정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잠재적 위기지역으로, 인구가 유입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통해 유인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저출생·지방소멸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질병이 발생한 다음 수술과 투약을 통해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정기적 진단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전체 치료성가에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이유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록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 2조제12호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인구감소관심지역 신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u>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③ <u>인구감소지역</u>에 입주한 사업자로 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u>인구감소지역</u>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u>인구감소지역등</u>에----- ----- ----- ----- ----- ----- ----- -----.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 ----- ----- ----- ----- ----- ----- ----- ----- ----- -----. ----<u>인구감소지역등</u>-----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¹⁾,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년 8월 현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2]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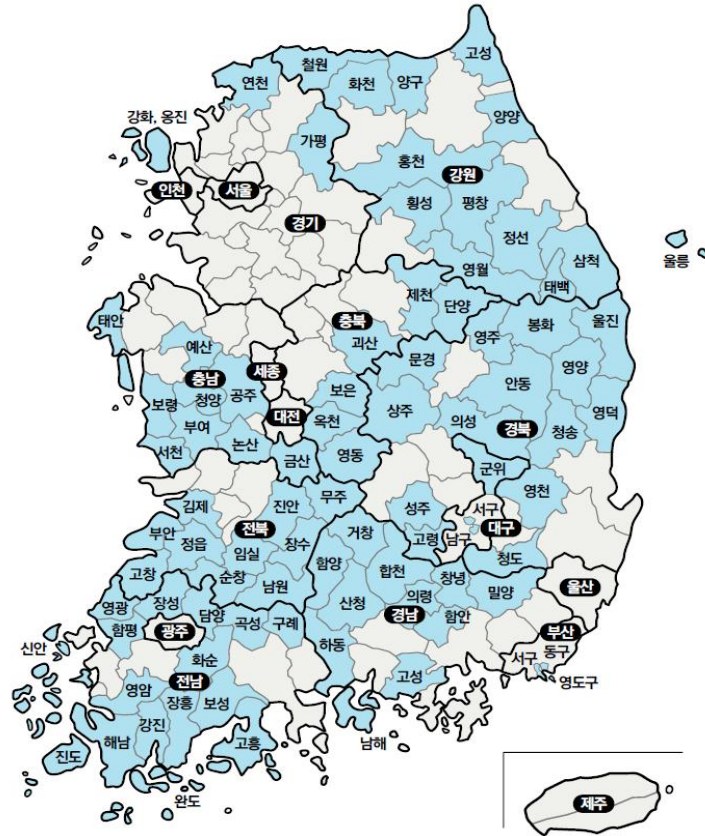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주: 군위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당시('21.10.19.)에는 경상북도에 속했으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23.7.1)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²⁾.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표 3]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부산(2)	금정구 중구
인천(1)	동구
광주(1)	동구
대전(3)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2)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4)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1)	익산시
경북(2)	경주시 김천시
경남(2)	사천시 통영시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의무, 행정적·재정적 지원, 입주 사업자에 대한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표 3]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비교

인구감소지역(현행법)	인구감소관심지역(개정안)
<u>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u>	<u>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u>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95%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5%를 배분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참고 1),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적용되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舊)「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2020. 12. 8)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 6. 10.)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표 4] 인구감소지역 제도 도입 시기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2020. 12. 8(법률 제17597호) 시행 2021. 6. 9.	제정 2022. 6. 10.(법률 제18877호)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초기인 만큼, 우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향후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 심사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수도권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명확히 함.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23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2호의2 중 “시·군·구”를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로 한다.

안 제23조제1항 단서 중 “인구감소지역등”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 1. ~ 12. (개정안과 같음) <u>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u>

		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 18. (생략)	13. ~ 18. (현행과 같음)	13. ~ 18. (개정안과 같음)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u>인구감소지역</u> 또는 「접경지역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 ----- ----- ----- ----- ----- ----- ----- --. ----- -- <u>인구감소지역등</u> -- -----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 ----- ----- ----- ----- ----- ----- ----- --. ----- -- <u>인구감소지역</u> -- -----

지원 특별법」 제2	-----	-----
조제1호에 따른 접	-----	-----
경지역으로서 지방	-----	-----
시대위원회가 정하	-----	-----
는 지역의 시·도	-----	-----
지사는 기회발전특	-----	-----
구의 지정을 신청	-----	-----
할 수 있다.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인구감소지역등에”로 하고, 같은 조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각각 “인구감소지역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u>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u> <u>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u> <u>(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u> <u>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u> <u>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u> <u>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u> <u>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u> <u>합한다)·군·구 중 장래 인</u> <u>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u> <u>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u> <u>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u> <u>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u> <u>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u> <u>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u> <u>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u> <u>다.</u>
13. ~ 18. (생 략) 제21조(<u>인구감소지역에</u> 대한 시 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3. ~ 18. (현행과 같음) 제21조(<u>인구감소지역등에</u> 대한 시책 추진) -----

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

---인구감소지역등에-----

② 인구감소지역등에-----

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인구감소지역등에-----

-----.